2015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180 호, 제 1181 호

다. 제출일자 : 2016. 5. 10.

라. 회부일자 : 2016. 5. 13.

2.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기를 이 지수결정액			미수납역	백 처리	수납율(%)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B/A)
2015	147,803	147,803	158,832	143,282	15,550	386	15,164	90.2

○ 세입예산현액은 1,478억 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588억 3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432억 82백만원을 수납하고, 155억 5천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3억 86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51억 64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0.2%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년도이	월액	집행잔액
연도	메건팩	이월액	Мото	26	26	이체	메건언곡	시골픽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197,807	2,999	4,537	27 (-27)	13 (-13)	6,266 (-6,290)	205,343	195,050	2,680	2,680	-	7,613 (3.7%)

○ 당초 예산액 1,978억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9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45억 3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53억 43백만원으로, 이중 95.0%인 1,950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1.3%인 26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76억 1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전용·변경·예비비·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13백 만원으로

-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수립 1건에

13백 만워임.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1건에

27백 만원으로

-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수립 1건에

27백 만워임.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45억 37백만원으로

-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소송 38억 82백만원

-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

3억 74백만원

- 서울역고가 추락사고 배상

1억 73백만워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대금 1억 7백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36건에 62억 9천만원으로
- 2015. 1. 1. 및 2015. 8. 3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을 위한 것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10개 사업에 총 26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2,053억 43백만원 대비 1.3%이며, 사고이월은 없음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76억 1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053억 43백만원 대비 3.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15	205,343	7,613	3.7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계약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71억 39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4억 73백만원

나 .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भागा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エレスのは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연도	메건뙉	이월액	MIDIDI	26	건당	이체	메인언액	시출액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80,267	12,400	-	-	-	-	92,667	24,533	47,307	46,784	523	20,827 (22.5%)

○ 당초예산액 802억 6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6억 67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5억 33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73억 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5%인 208억 2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예산 이용·전용·변경·예비비·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467억 8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5억 23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473억 7백만원은 예산현액 926억 67백만원 대비 51.1%임(명시이월 50.5%, 사고이월 0.6%)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08억 2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926억 67백만원 대비 22.5%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ュ
2015	92,667	20,827	22.5%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55억원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53억 27백만원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7	회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역	백 처리	수납율(%)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A)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B/A)
2	2015	108,620	108,620	93,787	93,787	ı	ı	1	100

○ 세입예산현액은 1,086억 2천만원이었으나 실제 937억 8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37억 87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징수결 정액 대비 100%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연도	메건맥	이월액	MIDIDI	인성	신공	이체	메진연백	시돌백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107,886	33,342	-	700 (-700)	-	-	141,228	60,916	49,488	49,488	-	30,824 (21.8%)

○ 당초예산액 1,078억 8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333억 4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12억 2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9억 16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94억 8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인 308억 2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전용·변경·예비비·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7억원으로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건에 5억원

-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1건에 2억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5개 사업에 총 494억 8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12억 28백만원 대비 35.0%이며, 사고이월은 없음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08억 2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412억 28백만원 대비 21.8%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용률(%)	비	ュ
2015	141,228	30,824	21.8%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69억 37백만원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138억 87백만원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3	회계	예산액	전년도	थानाना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TI츠애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Ę	변도	에겐뙉	이월액	MIDIDI	연성	건당	이체	메진연백	시골백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	2015	574,390	72,358	-	1,809 (-1,809)		98,672 (-102,272)		560,962	57,097	42,083	15,014	28,689 (4.4%)

○ 당초예산액 5,743억 9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3억 5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67억 4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09억 62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억 9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86억 8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예산 이용·전용·변경·예비비·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25백만원으로

-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 1건에

25백 만원임.

○ 변경

- 예산 변경은 9건에

18억 9백만원으로

- 응봉교 재설치 1건에

1억 74백만원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건에

1억 24백만원

-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2건에

9천만원

-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2건에

38백 만원

-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1건에

7억 7천만원

-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1건에

1억 54백만워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1건에

4억 6천만원임.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없음.

○ 이체

- 예산 이체는 60건에 1,022억 72백만원으로

- 2015. 1. 1. 및 2015. 8. 3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을 위한 것임.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34개 사업에 420억 83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150억 14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570억 97백만원은 예산현액 6,467억 48백만원대비 8.8%임(명시이월 6.5%, 사고이월 2.3%)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86억 8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6,467억 48백만원 대비 4.4%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용률(%)	비	고
2015	646,748	28,689	4.4%		
2014	575,772	24,211	4.2%		
2013	553,103	23,570	4.3%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284억 76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억 13백만원

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1711			수			天	l		출			
회계 연도	계	전년도 01월금	자자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에자금 화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고유목적 시업비 등	에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0월액
2015	41,533	239	-	469	15,585	-	25,240	41,533	24,268	17,265	-	_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9백만원, 이자수입 4억 69백만원, 예치금회수 155억 85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252억 4천만원을 합한 415억 3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58.4%인 242억 6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2억 65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관리하고 있음

4. 검토의견

가.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역	액 처리	수납율(%)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B/A)	
2015	147,803	147,803	158,832	143,282	15,550	386	15,164	90.2	
2014	133,434	133,434	152,102	137,881	14,221	890	13,331	90.7	
2013	120,956	120,956	141,099	127,900	13,199	749	12,450	90.6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478억 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588억 3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432억 82백만원을 수납하고, 155억 5천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3억 86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51억 64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0.2%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7~18)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07.5%로 총 110억 29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2014년 결산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186억 68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 차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음.

다만, 일부세입 중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49,181	45,668	45,193	△3,513	지하상가 '15년 재산평가액 하 락, 잠실광장 점포 임대계약 및 광고계약 유찰로 지하도상 가 임대료 수입 감소
도로사용료	66,972	68,430	67,276	1,457	도로사용료 부과기준인 '15년 도 공시지가 상승률 4.47%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도로사용 료 변동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및위약금	4,981	3,506	2,429	△1,475	도로법개정(14.1.14) 이후 고 의과실이 없었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으로 해석되어 도로관리청에서 변상금 부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14년 이후 변상금 부과건수 지속적 감소 추세
그외수입	12,096	14,676	13,338	2,580	'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맨홀관리기관과 협의 후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부과시기를 앞당겨 조정함으로써('16년초→ '15년말) '15년 장수결정액 일시적 증가
지난년도수입	1,492	13,470	2,279	11,978	도로시용료, 도로변상금 등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 수액 기준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91억 81 백만원 대비 93%인 456억 6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이는 지하상가의 2015년 재산평가액 하락, 잠실광장 점포 임대

계약 및 광고계약 유찰로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상가단위 민간위탁 당시 편의시설 설치 등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재산평가액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하도상가 활성화가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겠으며,

지하도상가 임대료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정당한 세수 확보방안 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세입예산액 49억 81 백만원 대비 70%인 35억 6백만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이는 기존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의 경우 측량오류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 예외대상으로 하던 것을 도로법 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으로 변상금 부과 예외대상 범위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변상금부과 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표] 참조), 예산액 120억 9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46억 76백만원으로 약 25억 8천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맨홀관리기관(구청, 수도사업소 등)과 협의 후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부과시기를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2015년 징수결정액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주요 내역

연번	기타잡수입	실제수납액 (백만원)	잡수입 처리사유
1	지하도상가 관리비 수입 (보도환경개선과)	9,104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포장공사 맨홀복구비 청구수입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수입 등 (도로관리과)	3,484	"
3	각종 소송비용 및 정산반납액 등 (9개 부서, 6개 도로사업소)	750	"

다) 미수납액(결산서 p.17~18, p.186, p190)

○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55억 49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결손처분	3억	86백 만원
- 기타사용료		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억	85백 만원
차년도 이월액	151억	64백 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4억	75백 만원
- 도로사용료	11억	53백 만원
- 기타사용료		62백 만원
- 기타사업수입		5백 만원
- 기타이자수입		11백만원
- 일반부담금		45백 만원
- 변상금및위약금	10억	77백 만원
- 과태료	19	l 9천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1백만원
- 그외수입	13억	38백 만원
- 지난연도수입	108	l 6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도로사용료,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금)이 108억 6백만원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27억 9천만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이월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134억 7천만원 중 실제수납은 16.9%인 22억 79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징수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다음 [표]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 손처분 내역 중 무재산이 2억 81백만원, 시효소멸¹)이 55백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무재산 5억 88백만원, 시효소멸 4억 1백 만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무재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정지나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 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중에서도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 해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¹⁾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또한,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무재산(20억 86백 만원)"과 "납세태만(60억 98백만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68억 94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납세태만의 경우는 끈질긴 징수독촉 노력이 필요하고 소송계류의 경우는 전문인력 투입과 특별관리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	액	15,549,448
결·	손처분	385,597
	무재산	281,420
	행방불명	16,129
	시효소멸	55,453
	배분금액 부족	32,236
	기타	359
차	년도 이월액	15,163,851
	무재산	2,085,640
	행방불명	65,547
	납세태만	6,098,272
	징수유예	_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893,627
	기타	20,765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МИН	변경	저요	이용/ 이사하여 지층에 다음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월액	집행잔액	
연도	메진왝	이월액	예비비	50	전용	이체	메인연백	시둘백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197,807	2,999	4,537	27 (-27)	13 (-13)	6,266 (-6,290)	1 205.343	195,050	2,680	2,680	-	7,613 (3.7%)
2014	176,780	2,318	472	-	306 (-306)	-	179,569	169,556	2,999	200	2,799	7,014 (3.9%)
2013	186,841	8,115	-	29 (-29)	221 (-221)	-	194,956	182,778	2,318	0	2,318	9,860 (5.1%)

가)개 요

○ 당초 예산액 1,978억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9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45억 3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53억 43백만원으로, 이중 95.0%인 1,950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1.3%인 26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76억 1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 p.49~60, p.209~220)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76억 13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도시위험시설(환기시설 등)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사업'등 17건 ([표] 참조)인데,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 발

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нлы			예 산	내 역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내역
			에건언득	기원기	불용액	비율
1	상황대응과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운영	37	17	20	54.2%
2	상황대응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1,213	446	367	30.2%
3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 및 건설정보 제공	13	8	5	40.9%
4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7	2	5	68.2%
5	시설안전과	도시 위험시설(환기시설 등)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사업	500	154	346	69.3%
6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5,480	34,344	1,137	3.2%
7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100	57	43	42.6%
8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80	30	50	62.6%
9	도로계획과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144	78	66	45.8%
10	도로관리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1,552	1,075	477	30.8%
11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9,159	7,437	1,722	18.8%
12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	10,363	9,827	536	5.2%
13	도로관리과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8	4	4	48.1%
14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1,505	1,193	312	20.8%
15	도로관리과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1,261	938	323	25.6%
16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529	2,169	360	14.2%
17	교량안전과	운행제한차량 단속	1,881	1,204	340	18.1%

○ **도시 위험시설(환기시설 등)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사업은 2014.10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옥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기 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전역에 산재된 환기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기구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 5억원 중 69.3%인 3억 46백만원이 불용됨.

-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을 위해 2억, 시설비는 응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위해 3억원을 편성 했으나.

[표]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환기구 2,809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26,072개소('14.9월기준) 등 안전점검 200,000천원
- 시설비
- · 응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300,000천원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계획 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공시설환기구 안전기준수립 용역'수행에 8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정작 환기구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응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은 환기구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각 관할기관들에 대부분 일임하고 본 사업에서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예산/집행상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에건가득	(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C=A-B)	(C/A)
	500	154	154	_	346	69.2%
사무관리비	200	69	69	_	131	65.5%
시설비	300	85	85	_	215	71.7%

-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318개(전체의 7%)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70%의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할 것임.
- 더욱이 의회 예산승인 당시 없었던 '공공시설환기구 안전기준수립 용역'시행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회 사전승인 원칙에 어긋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계획과 비목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 상에 환기구가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적발된 점에서 안전총괄본부는 도로상의 환기구를 관할하는 각 기관들에 환기구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표] 점검결과 지적사항

	Э Н	- <u>J</u>]	공공기반시설 부속					일반건축물 부속		
	구 분	계	소계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 상 가	공 영 주차장	소계	공동 주택	나머지 건축물
	점검개소	18,862	2,809	2,418	252	71	68	16,053	6,992	9,061
	소계	1,318 (7.0%)	721 (25.7)	706 (29.2)	7 (2.8)	5 (7.0)	3 (4.4)	597 (3.7)	150 (2.1)	447 (4.6)
지 적	덮개 걸침턱 손상 등	121 (0.6%)	84 (3.0)	78 (3.2)	2 (0.8)	4 (5.6)		37 (0.2)	1	36 (0.4)
개 소	덮개 훼손 변형	666 (3.6%)	598 (21.3)	598 (24.7)				68 (0.4)	6	62 (0.7)
	차단시설 미흡, 마감재 훼손 등	531 (2.8%)	39 (1.4)	30 (1.2)	5 (2.0)	1 (1.4)	3 (4.4)	492 (3.0)	143 (2.0)	349 (3.8)

-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사업은 도심 주요지역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천 5백만원 중 5천 3백만원을 지 출하고 29%인 2천 2백만원이 불용됨.
 - 동 사업은 2014년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원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등 불량한 용역 시행을 지적받고, 용역을 일시 중단해('14.11.17.~'15.2.24.)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의 약 50%이상의 금액이 불용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시에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예방 계도 용역비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삭감(약 90%) 하여 편성하였으나.

총 예산 중 약 71%인 5천 3백만원만 사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디자인 개선 용역비(2천만원), 워크숍 행사비용(8백만원), 자문단 운영(7백만원), 현장직원방한복 구매(7백만원), 간담회 비용(4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노상적치물 계도의 간접비용에 치우쳐 있어 차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계도효과가 큰 비목에 집중하면서 예산을 보다 긴축하는 노력이 요망됨.

- 한편, '거리가게 시험허가거리 디자인 개선 용역비' 2천만원 집 행²⁾의 경우는 자치구 소관 사무임에도 시비를 투자한 것으로 지

²⁾ 시범대상: 동대문구 왕산로 거리가게 판매대,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거리가게

양될 필요가 있으며,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사업이 자칫 불법거리가게를 양산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2015년도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5 예산집행액	2015 예산집행잔액	세부집행내역
계	74,940	53,241	21,699	
사무관리비	63,940	46,448	17,492	- 시.자치구 거리가게 담당직원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예방계도 사업 및 기타경비 (자문단 운영 및 워크숍 기타경비)	63,940	46,448	17,492	워크숍 행사비용: 8,277천원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참석 수당 등): 7,338천원 -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디자인 개선 용역비:19,950천원 - 거리가게 현장점검 직원 방한복 구매: 7,308천원 -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현장 사진찰영비: 3,575천원
공공운영비	6,000	3,032	2,968	키라이르비 미 스키비 드 .
거리가게 공공운영비	6,000	3,032	2,968	-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 3,03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3,761	1,239	- 자치구 거리가게 담당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5,000	3,761	1,239	직원들과의 업무협의 및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관련 간담회 비용 등 : 3,761천원

[표] 최근 5년간 적치물 정비 및 거리가게 현황

연도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치물정비 현황	21,796	18,746	11,158	11,433	9,339
거리가게 현황	9,117	9,292	8,826	8,662	8,038

○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은 24시간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17개의 기동단속반과 3개의 고정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18억 81백만원 중 12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18%인 3억 4천만원이 불용됨.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차액(1억 28백만원), 단속반 축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 및 유가하락에 의한 미집 행잔액(1억 44백만원), 표지판 훼손 물량 절감액(1천만원) 등에 해당함.
- 본 사업은 2015년 추경을 통해 당초 총 사업비 23억 81백만원 중 5억원을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천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야간단속반 감축 및 일부 주간단속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을 통해 5억원을 절감한 것 이라 설명한 바 있으나,

금회 집행잔액 중 단속반 축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 등으로 발생한 1억 44백만원은 2015년 감추경 당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안전통합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 실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 액 12억 13백만원 중 30%인 3억 67백만원이 불용됨.
 -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 1억 3백만원, 시설비 1 천 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6백만원 등으로,

780,968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 분	2015본예산(a)	집행액(b)	명시이월(c)	잔액(a-b-c)
계	1,213,289	446,399	400,000	366,890
사무관리비	14,100	12,868	0	1,232
공공운영비	401,529	298,770	0	102,759
시설비	16,692	0	0	16,692

134,761

400,000

(단위: 천원)

246,207

- 여기서, 공공운영비의 경우 당초 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로 4 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심사 조정액과 낙찰차액으로 1억 3백만원이나 불용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비과학적 이고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 시설비의 경우는 당초 편성액 1천 7백만원 전체를 불용하였는데, 이는 불시 재난발생에 따른 통신장에 시 CCTV와 연계된 광케이블 공사 등을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이처럼 매년 예비성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유사시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는 '서울경찰청 CCTV 고도화사업에 따른 서울시 연계시스템 증설(5억 67백만원)'과 'CCTV 영상서비스 보안장비 확충(2억 3천만원)' 등 총 7억 97 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업일정 지연과 국민안전처의 관련기준 및 가이드라인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이 중 4억원은 명시이월되고, 2억46백만원은 불용되었는 바,

이처럼 타기관과 연계성을 갖는 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조사와 협의를 거쳐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결산서 p.155)

○ 예산 전용은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수립** 1건에 14백만원으로.

조직개편('15.1.1./'15.8.31.)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수가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1천 4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9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4)에 따라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³⁾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⁴⁾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 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표] 예산전용 현황

							면기· 연원/
	예신	난과목		 - 예산액 -	증감	전용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에건틱	증액	감액	
안전의식 확산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계획수립	101-04 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	43,354	13,500	_	56,854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20,400	-	13,500	106,900

(단위: 처워)

(단위: 천원)

라) 이체(결산서 p.159~p161)

○ 예산 이체는 36건에 62억 9천만원으로 2015. 1. 1. 및 2015. 8. 3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것임.

[표] 예산이체 현황

주는부서 받는부서 비고 계 6,289,576 계 6,289,576 상황대응과 1.712.368 '15.8.31 조직개편 시설안전과 안전총괄과 2,080,802 '15.1.1. 조직개편 3,816,902 물순환안전국 '15.8.31 조직개편 23,732 도로시설과 2,398,622 교량안전과 2,398,622 '15.1.1. 조직개편 안전총괄과 37,800 '15.1.1. 조직개편 74,052 도로관리과 시설안전과 7,132 '15.1.1. 조직개편 교량안전과 '15.1.1. 조직개편 29,120

마) 변경사용(결산서 p.169)

○ 예산의 변경은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수립 1건에 2천 7백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원 증가 및 2015.6월부터 5급 팀장

등의 대민활동비 소급지급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단위: 천원)

[표] 변경사용 현황

		과목	ᆐᆁᆒ	변경	변경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총 1건	256,900	26,600	26,6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06,900	26,600		2015-10-28
	·민방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204-03 특정업무경비	150,000		26,600	2015-10-26

바) 예비비(결산서 p.175)

○ 예비비 지출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소송 등 4 개 사업에 45억 37백만원으로,

[표] 예비비 지출내역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보도환경개선과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카 출입구 소송	3,881,984	2015-03-13	지하도상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구로역~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	107,455	2015-10-19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대금 패소에 따른 공사대금
도로시설과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	374,320	2015-12-30	노량교 낙하물사고 손해배상금
교량안전과	서울역고가 추락사고 배상	173,031	2015-02-17	판결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합계	4건	4,536,790		

○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소송**은 지하도상가 출입구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전부 패소 에 따른 판결금액 38억 82백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임.

[표]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부	당이득금 총액	금 3,881,983,900원	('15.2.28. 산정기준)
	- 부당이득금	2,162,124,000원	('08.4.23~'13.4.22)
	- 5% 가산금	275,538,683원	('09.4.23~'13.12.3)
	- 20% 지연손해금	535,495,917원	('13.12.4~'15.2.28)
	- 추가 부당이득금	908,825,300원	('13.4.23~'15.2.28)

※ 소송비용은 별도임

- 이는 2013.4.22일 서울중앙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 3심 끝에 2015.2.12일 판결 선고에 따라 원고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가 부당이득금 판결금 전액에 대해 2015.2.24일 반환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3.12.4일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높은 이자 (1백만원/일)를 감안하여 예산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 두 번째로,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은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6.21일 공사현장 의 안전울타리 일부가 노량대교 아래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 추락하면서,
- 자전거를 타던 시민에게 상해를 입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4억 34백만원 중 3억 74백만원에 해당함.

[표] 배상금액 내역

구 분	금 액	비고
1심판결 손해배상액	225,513,476원	
2심판결 추가 손해배상액	118,483,911원	여명종료일 증가(2018.6.11. → 2022.3.2.)로 치료비, 개호비 증가 등
소계(최종 손해배상액)	343,997,387원	
지연손해금	6,728,640원	최종 손해배상액(343,997,387원) × 355일(사고일 2012.6.21.부터 변제충당일 2013.6.10.까지)/365 × 민법이 정한 연 5%비율 - 1,000만원(원고가 2013.6.10. 이의를 유보하고 ㈜창광건설의 공탁금 수령)
최종 손해배상액 원금	350,726,027원	
이자 합계	83,593,591원	※ 이자 산출기준일 : 2015. 12. 28
손해배상금 총액	434,319,618원	

※ 1일 지연이자('15.12.28.일 이후) : 188,491원

- 그러나, 여기서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 약 일반조건⁵⁾에 따라 도급계약사인 창광건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창광건설에서 일부 금액(6천만원)만 지급한 상황이고, 항소심 판결문에는 분담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단,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서울시가 예비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른 것임.

[표] 배상금 지급내역

구 분	배상금 총액	우리시 지급예정액	㈜창광건설 지급액 (지급일 : '15. 12. 21)	비고
총계	434,319,620	374,319,620	60,000,000	

(단위:원)

※ 창광건설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자(83,593,591원)에 대하여 우선 변제 후 원금이 변제됨에 따라 선 지급에 따른 이자변동은 없음

⁵⁾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8.}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u>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u>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한편, 서울시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창광건설에 구상권청구 소송제기를 통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나,

서울시 공사이고 감독권한을 가진 발주청으로써 공사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책임을 회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음으로, 서울역고가 추락사고 배상은 2009.11.16일 서울역 고 가도로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 진행하던 중 과속 및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 대편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고가하부로 추락한 사고에 대한 배상으로,

해당 사고지점의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서울시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며 전체 피해액의 30%인 1억 83백만원을 손해배상함.

- 여기에 2015.2.17일 기준, 7천 1백만원의 이자가 추가되어 총 손해배상금은 2억 54백만원에 해당하며, 이후 1일 지연이자가 약 10만원이 되어 더 이상의 비용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참고로, 해당 노선은 서울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회사(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손해배상금액 배상보험 책임한도가 1억원이며, 공제액을 제하고 초과한 금액 1억 73백만원에 대해 예비비로 지급한 것임.

[표] 배상금 부담내역

(단위: 원)

구 분	배상금 총액(원)	보험사부담액(원)	서울시부담액(원)	비고
총계	254,037,873	80,605,966	173,431,907	

※ 보험사 부담액 산출내역

구 분	책임한도액(원)	공제액(원)	보험사 부담금(원)	비고
총 계	100,000,000	19,374,034	80,605,966	변호사비 16,177,700원 신체감정대응비 440,000원 기타 2,776,334원

○ 마지막으로,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발주 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간접비에 대한 청구소 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액 총 1억 7백만원 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임.

[표] 판결금 및 이자액

(단위: 원)

구 분	판결금액	이자 (연5%, 854일)	판결일 이후 (연20%, 167일)	청구금액
판결금	88,916,608	10,402,025	8,136,478	107,455,111

- 해당 공사는 2012년 준공되어 확보된 예산이 없어 더 이상의 추가 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본 소송 건과 마찬가지로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발주처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업체에도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니 만큼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적정 예산편성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음

나 .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변경	 	이용/	/ 에사전에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연도	에건목	이월액	Мото	(O	0 -	이체	1 01224	에 근 근 극 시 골 극	에건전곡 시골곡	에 근 단국 시골곡	개단단크 (시골크)	계명시	사고	(불용률)
2015	80,267	12,400	-	1	-	-	92,667	24,533	47,307	46,784	523	20,827 (22.5%)		
2014	40,238	65,861	-	ı	1	-	106,099	66,860	12,400	0	12,400	26,839 (25.3%)		
2013	109,286	37,938	-	264 (-264)	_	-	147,224	72,459	65,861	0	65,861	8,903 (6.0%)		

가)개 요

○ 당초예산액 802억 6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6억 67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5억 33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73억 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5%인 208억 2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4, p.61, p.221~222)

○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5%인 208억 27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등 3 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이상 사업 현황(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ㅂ기뻐				예 산 내 역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내역	
	(4)				예간연락	기물의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강변북로(성 확장(교통기	산대교 개선분	~반포대교) 담금계정)	20,500	0	15,500	75.6%	
	도로계획과				11,441	7,714	3,172	27.7%	
3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계)확장(교 정)			11,028	6,499	2,029	18.4%	

-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사업은 강변북로 병목구간 확장 및 구조개선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제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려던 것으로 예산현액 205억원 중 75.6%인 155억원을 불용함.
 - 본 사업은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⁶)'과 연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2008.6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작해 2012.2월 양화~원효구간 실시설계/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2013.10월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동 사업의 실시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이미 시행된 턴키구간(양화대교~원효대교) 실시설계비 약 155억

^{6) 2007}년 8월에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의 55만m²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31조원을 투입해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건국 이후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불린 대규모 사업임. 2013년 10월 서울시는 토지소유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

원 및 2·3위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약 50억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것으로.

- 서울시가 2016년 5월 현재까지 수차례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우선 턴키입찰 취소에 따른 설계보상비 50억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하반기에 집행 예정에 있으며, 실시설계비 155억원은 불용처리함.

- 문제는 2012.2월부터 2013.10월 실시설계가 중단되기까지 진행된 실시설계분에 대해 향후 동 사업이 좌초될 경우 설계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규모 예산낭비로 이어질 소지를 담고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동 사업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이처럼 대형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다음으로,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은 방화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올 림픽대로와 강서구 방화동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 전년도 이월액 36억 6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4억 41백

만원 중 77억 14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2백만원은 명시시월, 5억 23백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27.7%인 31억 72백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도 교량상판 전도·추락 사고에 의한 10개월 공사중단에 따른 과다사고이월, 과다불용 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

2015회계연도에도 준공 전 인수기관(시설관리공단, 강서구청) 합동점검 시 추가물량(차량 방호시설, 과속방지틱 등) 요구 시행과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명목으로 준공기한을 1개월 연기 ('15.12.30.~'16.1.30.)함에 따라 감리비 3천 2백만원 명시이월 및 공사비 5억 23백만원 사고이월된 것이며,

[표] 합동점검 요청사항

점검기관	요청사항	비고
	R-D 교대 부분 토공구간 추락사고 및 인원통제를 위한 메쉬휀스 설치	
서울특별시	R-A 터널시점부 차량방호시설 설치	
시설관리공단	기존 램프C교 바닥판 물끊기홈 설치	
	포장상태조사 자료(로드스케너에 의한 SPI지수 등)	
7))] 7 7)	부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강서구청	계량계측조합회관 주차장진입부 경계블록 및 측구 재설치	

[표]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위치	개선내용	개선사유	비고
강서구 방화터널~올림픽대로 램프구간	제한속도 조정 (30→40km/h)	터널 램프구간 제한속도 일치로 차량 운전자의 속도연속성 확보 및 추돌사고 예방	서울지방경찰청 통보

- 또한, 집행잔액 31억 72백만원은 전체 공사에 대한 정산액으로 이처럼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과 설계가 그만큼 부정확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집행잔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시	설 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계
소 계	보상비	시설공사비		선 년 기	기열무네비	<u>8</u> /11
3,155	640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및 교통시설 안전공: 조경공: 부대공 등: 계: 2	656 700 252 110 797	2 (정산잔액)	15 (집행잔액)	3,172

다)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75)

○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총 예산현액 114 억 41백만원 대비 4.6%인 총 5억 23백만원을 인수기관 합동점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히계	ᆸᆁᆝᇭᄼᅄᆝᅄᄊᅘ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역	액 처리	수납율(%)
연도	예 산 액	산 액 예산현액 ^{8 1 2 8}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B/A)
2015	108,620	108,620	93,787	93,787	-	-	-	100
2014	113,113	113,113	85,584	85,584	-	-	-	100
2013	82,344	82,344	82,344	82,344	-	-	-	100

가)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1,086억 2천만원이었으나 실제 937억 8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37억 87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징수결정액대비 100%임.

나) 세수추계

- 기타회계전입금은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는 세입예산액 323억 92백만원 중 175억 59백만원만 교부되어 148억 3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음.
 - 그 사유는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태릉~구리간도로확장,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총 국비 323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175억 59백만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으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하겠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연도	예간꼭	이월액	Мото	(O	긴	이체	메인언백	시골끡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107,886	33,342	-	700 (-700)	_	l	141,228	60,916	49,488	49,488	İ	30,824 (21.8%)
2014	128,354	5,062	-	1	-	-	133,415	72,285	33,342	3,000	30,342	27,789 (20.8%)
2013	82,344	12,376	-	ı	-	-	94,720	86,890	5,062	0	5,062	2,768 (2.9%)

가)개 요

○ 당초예산액 1,078억 8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3억 4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12억 2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9억 16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94억 8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인 308억 2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5, p.62, p.223~224)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인 308 억 24백만원으로, 전년(20.8%)과 비슷한 수준이나, 높은 불용률 은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등 4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이상 사업 현황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нуы					예 산	내 역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내역
	(-1)			에겐 연락	시물학	불용액	비율	
1	도노계획과	시계) 확	장]교~의정부	59,263	16,185	11,312	19.1%
	도로계획과					37,132	10,625	16.9%
3	도로계획과	신사사거리 개설	~고양/	시계간 도로	12,981	2,329	8,220	63.3%
4	도로계획과	감일~초이	간 광약	부도로 건설	1,200	600	600	50.0%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 동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고 이월액 2억 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9억 81백만원 중 63.3%인 82억 2천만원이 불용됨.
 - 2015년 예산 127억 74백만원은 국비 93억 26백만원, 시비 34억 48백만원이며, 불용액 대부분은 미교부 국비 82억 16백만원에 해당함.
 - 이처럼 교부가 확실치 않은 국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예산수립 및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편성 시에는 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실한 내시액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일단 편성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서울시 동북부지역(강동구 상일동)과 경기도(하남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원 중 50%인 6억원을 불용함.
- 올해 말까지 완료예정인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47억 49백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동일한 비율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5 회계연도 예산 역시 시비 6억원, 국비 6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국비 6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불용된 것임.

[표] 연도별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연 도	합 계	국 비	시비	비고
합계	11,100	5,500	5,600	
2012년	7,000	4,000	3,000	
2013년	3,000	1,000	2,000	
2014년	500	500	_	
2015년	600	_	600	

- 전체구간 5.2km 중 서울시 구간은 140m로 2015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하남시 구간만 201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공사 완료 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하남시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대 시비 투자비율대로 최종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사업은 연장 5.45km 왕 복 4차로 도로를 6~7차로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광역교통시설특 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진행 중으로,

- 불용액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19.1%인 113억 12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18.4%인 20억 29백만원으로 총 133억 41백만원이 불용됨.
- 해당 도로는 2008년 공사를 착공했으나 지하차도 연장, 방음벽 형식 변경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주민민원 발생으로 사업계획 이 변경되면서 연례적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인데,

[표] 2015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워)

회계별	통계목	'15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교통사업	계	3,000	8,028	11,028	6,499	2,500		2,029
특별회계	시설비	3,000	8,028	11,028	6,499	2,500		2,029
	계	33,620	25,643	59,263	16,185	31,767	0	11,311
광역교통 시설	시설비	32,600	25,606	58,206	15,135	31,767		11,304
- 시 ¹ =	감리비	1,000	37	1,037	1,037			0
, , , ,	시설부대비	20		20	13			7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도에 대규모 사고이월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17억 67백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원의 명시이월 역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민원 등으로 사업집행계획이 변경됨에따라 발생한 것임.

-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수밖 에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다) 변경사용(결산서 p.170)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7억원으로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에 5억원,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에 2억원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변경사용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 감액		변경 일자	사 유
긴		계 (2건)		91,827	石역 700	증액 700	린/[
	도로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시설비	33,100	500	0	2015-	당초 예산편성시 한도액 부족으로 감리비를
1	계획과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감리비	500	0	500	09-07	부족 편성하여 부족 감리비 확보를 위해 예산변경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시설비	57,923	200	0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 공기연장에 따라 부족감리비 확보를 위해
2	도로 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감리비	304	0	200	2015- 08-31	예산변경 - 구리시구간 '군·경 합동검문소' 협의 지연, 한강둔치 유지 관리기관별 시설 보완 및 추가요구, 방음시설 설치 민원, 군작전시설 보완 등 으로 공기연장 (6월말→12월말)

라) 차년도 사고이월

○ 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음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예산액	전년도	श्रीमामा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연도	메진뙉	이월액	MIDIDI	변경	찬	이체	메인연백	시팔백	계	명시	사고	(불용률)
2015	574,390	72,358	-	1,809 (-1,809)	25 (-25)	98,672 (-102,272)	h/lh //lx	560,962	57,097	42,083	15,014	28,689 (4.4%)
2014	500,631	73,649	1,492	861 (-861)	6 (-6)	23,902 (-28,902)	575,772	479,203	72,358	10,085	62,273	24,211 (4.2%)
2013	503,251	49,852	-	581 (-581)	-	-	553,103	455,884	73,649	978	72,671	23,570 (4.3%)

가)개 요

○ 당초예산액 5,743억 9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3억 5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67억 4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09억 62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억 9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86억 8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6, p.63~76, p.225~243)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86억 89 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녹번천복개 보수공사'등 34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이상 사업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예 산		· 역단전/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게건		-내역
인민	(과)	/ H H TO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1	보도환경개 선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6,400	6,096	304	4.7%
2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5,037	3,551	564	11.2%
3	도로계획과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6,715	1,216	762	11.4%
4	도로계획과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3,052	2,681	372	12.2%
5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삼거 리) 확장	5,700	3,127	1,373	24.1%
6	도로계획과	봉화산길(중화역변)도로확장	50	0	30	59.9%
7	도로계획과	오류동 오리로 확장	100	0	76	76.5%
8	도로계획과	왕십리오거리 지하차도 공간 활용 용역	100	0	70	69.8%
9	도로계획과	경인로 고산초등학교 옆 도로확장 용역	100	0	100	100.0%
10	도로관리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57,459	51,344	5,066	8.8%
11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11,434	10,430	1,004	8.8%
12	도로시설과	내곡터널외 1개소 유지관리	626	407	220	35.1%
13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교면포장 개량공사	10,940	10,052	888	8.1%
14	도로시설과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9,000	8,453	547	6.1%
15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인수 관련 기반시설 조성	55	24	31	57.0%
16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7,000	6,308	692	9.9%
17	도로시설과	탄천2고가 보수공사	3,345	2,822	523	15.6%
18	도로시설과	마들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공사	2,383	1,879	503	21.1%
19	도로시설과	염창IC 보수공사	455	306	149	32.8%
20	도로시설과	북부고가교 보수공사	1,500	1,143	357	23.8%

	부서명			예 산		
연번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불용액	·내역 비율
21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9,341	7,627	1,294	13.9%
2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150	89	61	40.9%
23	도로시설과	감독위탁 공사관리	8,392	7,812	580	6.9%
24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 ,세척) 일상유지보수	10,500	9,864	636	6.1%
25	도로시설과	터널위치 번호판 설치	100	40	60	60.0%
26	도로시설과	녹번천복개 보수공사	1,026	710	316	30.8%
27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6,262	5,469	793	12.7%
28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279	195	84	30.1%
29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1,252	747	352	28.1%
30	교량안전과	동호대교 보수공사	2,619	2,223	397	15.1%
31	교량안전과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	6,562	5,844	718	10.9%
32	교량안전과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10,055	9,528	527	5.2%
33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100	46	54	53.5%
34	교량안전과	서대문고가 철거	5,700	5,364	336	5.9%

- 이 중 경인로 고산초등학교 옆 도로확장 용역은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의 2015년 도로교통 소통개선사업으로 기추진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현액 1억원 중 전액을 불용했으며,
 - 오류동 오리로 확장과 왕십리오거리 지하차도 공간 활용 용역 사업은 편성했던 예산에 비해 27% 및 37%에 해당하는 금액

- 의 용역만 발주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70%이상(낙찰차액 포함)을 불용한 것으로 이들 모두는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의회 모두 신중한 판단이 부족했다 여겨짐.
- 이외에도 불용률이 50%이상인 사업은 총 7건으로 대부분이 사전 조사 부족에 의한 과다한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향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은 헌릉교 및 신내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헌릉교와 신내교에 대한 성능평가 및 제원확인을 위해 4천 6 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54%인 5천 4백만원을 불용 함.
 - 헌릉교는 32톤 이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로서 DB-18 에서 DB-24로 성능개선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 2015.6월 도로계획과에서 발표한 KTX수서역 등 기반시설 입지에 따른 도로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일 대상인 헌릉로를 확장할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 추진을 방지하고 헌릉로 확장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 2015년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임.

[표] 헌릉교 관련 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성능개선(DB-18→DB-24)
도로계획과	밤고개로, 헌릉로 확장 사업	도로확장(왕복 6차로→10차로)

- 이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여겨지나 예산편성 시 타부서와의 긴 밀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은 낳지 않았을 것임.
- 한편, 신내교의 경우도 현재 DB-18을 DB-24로 성능개선하려는 것이었으나, 막상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성능평가에서 신내교의 원 설계기준(DB-18)과 달리 DB-24 이상의 충분한 내하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능개선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를 하지 않고 타절준공처리 하였는데,
- 서울시가 지금까지 신내교를 관리하면서 설계성능 이외에 실제성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노후교량들에 대한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마들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공사 사업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4개 지하차도(마들, 노원, 상계, 수락)의 포장 및 구조물 등을 보수하려는 것인데, 전년도이월액 12억 8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억 83백만원 중21.1%인 5억 3백만원을 불용함.

[표] '15년 예산집행 현황(마들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공사)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시 설 비 (2014 사고이월)	1,283	1,166	117	9.1%	
민간대행사업비 (2015 예산)	1,100	714	386	35.1%	
합계	2,383	1,880	503	21.1%	

- 상기 [표]에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12억 83백만원은 당시 동절기 일시 공사중지에 따른 것으로, 1억 17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공사 물량정산 감액 9천만원과 보험료 정산 감액 2천 7백만원에 해당함.
- 이처럼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다음 해에 또 다시 불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서울역 7017프로젝트 사업** 중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와 '시민운영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101억 96백만원 중 2.8%인 2억 8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표] 서울역 7017프로젝트 사업 불용액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불용금액	불용사유
서울역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393,000	설계용역 낙찰차액
7017 프로젝트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시설비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1,112,030	바닥판 철거공사 낙찰차액
사업			서부역교차로 교통신호개선공사	67,733,800	서울역 서부교차로 교통신호기 개선 공사 동절기 굴착통제로 3월 이후 공

					사 진행으로 굴착복구비 원인행위 불
					가로 불용 발생
			서울역7017 프로젝트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19,850,000	설계감리용역 낙찰차액
			(설계감리)용역		
			시설부대비	180,466,200	시설공사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시민운영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75,500	집행잔액
		외빈초청여비		8,243,790	국외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합계		289,074,320	

- 이 중 불용액 세부내역은 상기 [표]와 같으며, '서부역교차로 교통신호개선공사'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불용사유로, 서울시는 서울역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 안전시설 심의지연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절차의 이행이 전체적인 공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임.

- 또한 '시민운영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사업 관련 외빈초청여 비 집행잔액 824만원은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2천 5백만원을 전용하여 국제공모당선자(Winy Maas) 등의 초정여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항공료 등과 같은 여비는 초청자의 동선에 따라 얼마든지 근 사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비목임에도 약 33%의 잔액이 발생했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음.

다) 예산의 전용(결산서 p.156)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표] 참조)으로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사무관리비 1억 96백만원 중 2천 5백 만원을 감액하여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였는데,

[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용 사업현황

(단위: 천원)

엺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	금액	변경 일자	전용 사유		
면	エ시리	ペープ はら	5/1 1	에건 ^박	감액	증액	일자	<u>26 Ап</u>		
			1건	196,000	25,000	25,000				
	서울역 일대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 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96,000	25,000	0		서울역7017프로젝트 기본실시설 계관련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등		
1	^{달대} 종합발전 기획단		301-07 외빈초청여비	0	0	25,000	15-11-18	시민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에 따른 항공료 등 여비지급 을 위해 금년도 예산중 일부를 예산과목(편성목) 전용		

- 이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 국제 설계공모 당선자인 Winy Maas 등 관계자의 시민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항공료 등)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임.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빈초청여비'는 당초 예산액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통해 새로운 비목을 만든 것은 의회승인 과정이 누락되었다는 측면에서 합법적 인 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년도 사무관리비 예산(1억 96백만원)의 경우, 2015 년도 제1회 추경('15.7.27)을 통해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Winy Maas 등 외빈초청여비 역시 초청시기를 다소 조정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됨.

[표] 외빈초청 관련

연번	일시	내용	지출비용(원)	비고
1	'15.07.01	제2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4,860,380	당선자 시민위원회 참석 발표 (Winy Maas 외 2인 참석)
2	'15.08.07	조경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925,140	조경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Ben Kuipers외 1인 참석)
3	'15.10.01	제3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8,669,800	당선자 시민위원회 참석 발표 (Winy Maas외 3인 참석)
4	'15.12.10	제4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1,300,890	시민위원회 참석 (이교석 수석건축가, 네덜란드)
		소계	16,756,210	

라) 이체(결산서 p.162~166)

○ 예산 이체는 60건에 1,022억 72백만원으로 2015. 1. 1. 및 2015. 8. 3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이체내역 (단위 : 천원)

주는	부서	받는부	나서	비고		
계	계 102,272,417		102,272,417			
도로시설과	87,976,417	교량안전과	87,976,417	'15.1.1. 조직개편		
도로관리과	10,696,000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10,696,000	'15.8.31 조직개편		
도로계획과	3,600,000	도시교통본부	3,600,000	'15.1.1. 조직개편		

마) 변경사용(결산서 p.171)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응봉교 재설치 사업 등 9건으로 변경금액은 총 18억 9백만원이며 다음 [표]와 같음.

[표]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 사업현황

(단위: 천원)

연		변경금액							
년 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u> </u>	변경일자	변경사용 사유	
				65,013,000	1,809,400	1,809,400			
1	도 로	응봉교 재설치	401-02 감리비	358,000	173,700	0	2015-11-12	터널형방음벽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변경	
1	계획과	응봉교 재설치	401-01 시설비	6,906,000	0	173,700	2015-11-12		
	도 로	서울제물포터널 건 설	401-01 시설비	500,000	124,000	0		서울제물포터널홍보를위한	
2	1	서울제물포터널 건 설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0	0	124,000	2015-07-06	전시관 설치 운영비용	
3		남 부 순 환 로 (개봉역주변) 구 조 개 선	401-01 시설비	4,467,000	50,000	0	2015-07-09	남북순환로 개봉역 주변 구조 개산시업의 준공연기에 따른 김리비 부족분 확보	
J	계획과	남 부 순 환 로 (개봉역주변) 구 조 개 선	401-02 감리비	350,000	0	50,000			
4	, 도 로	남 부 순 환 로 (개봉역주변) 구 조 개 선	401-01 시설비	4,417,000	40,000	0	2015-11-12	광사 미무리에 따른	
4	계획과	남 부 순 환 로 (개봉역주변) 구 조 개 선	401-02 감리비	400,000	0	40,000	2013-11-12	부족 감비 확보	
5	도 로	도 로 시 설 물 (터널,복개,지하 차 도 , 세 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0,500,000	37,000	0	2015-09-30	도로시설물 중 성이도 버커 유지과기 공사	
	시설 과	시 설 과 도 로 시 설 물 (터널,복개,지하 401-02 차 도 , 세 척) 감리비 일상유지보수	0	0	37,000	2013 03 30	여의도 방커 유지관리 공사 감라비 확보를 위해 변경		
6		도 로 시 설 물 (터널,복개,지하 차 도 , 세 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0,463,000	700	0	2015_10_05	도로시설물 중	
0	시 설 과	도 로 시 설 물 (터널,복개,지하 차 도 , 세 척) 일상유지보수		37,000	0	700	2015-10-05	약도병기보수공사감비 부족분확보를 위해 취변경	

연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બી કો બી	변경	금액	버건이기	변경사용 사유	
번	十八 8 / 11 / 11 / 13 / 13 / 13 / 13 / 13 /		동계국	통계목 예산액 금액 증액		변경일자	현경사당 사표		
7	교 량	한 강 교 량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6,740,000			1종 교량 보수공사 안전 및 프기 회사를 이런 투자 가기		
'	안 전 과	한 강 교 량 일상유지보수		260,000	0	770,000	2015-02-27	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 감리 시행	
8	교 량	도로시설물(교량) 일 상 유 지 보 수	401-01 시설비	10,015,000	154,000	0	2015-02-27	1종 교량 보수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 감리	
0	안 전 과	도로시설물(교량) 일 상 유 지 보 수		0	0	154,000	2015-02-27 품설 확모 시행		
9	도 로	서 울 역 고 가 프 로 젝 트	401-01 시설비	9,600,000	460,000	0	2015-06-29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설계	
	관리과	서 울 역 고 가 프 로 젝 트	401-02 감리비	0	0	460,000	2010 00 29	감리 및 건설공사감라시행에 따른 감리비 확보	

- 상기 [표]에서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세척) 일상유지보수',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이상 4개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던 비목임에도 변경사용을 통해 새로이 비목을 신설한 것으로,
 - 이 역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비목이라는 전에서 의회 사전승인권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감리비'가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다가 변경사용을 통해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76)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

차도 건설'등 총 6개 사업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은 2건에 해당함.([표] 참조)

[표] 20%이상 사고이월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3,000	7,585	3,627	0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10,000	10,500	7,182	281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디지털산업단 지를 연결하는 수출의 다리 지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서부간 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 전년도이월액 45억 8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억 85백만원 중 9억 58백만원을 협의보상비로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7.8%인 36억 2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30억원이 명시이월됨.
 - 사업대상부지 소유주인 교학사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4년 명시이월된 보상비 45억 85백만원 중 9억 58백만원을 협의보상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 36억 27백만원은 2016년 수용재결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 30억원 역시, 협의보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여 2016년 수용재결7)을 위해 명시이월하였는데.

이처럼 명시이월 예산이 다음 해에 또 다시 사고이월되는 것 은 장기간에 걸쳐 예산이 수면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낳기 때 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나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지정체 현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기간 역시 연장되는 것이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사업은 총 사업기간 2014년 8월~2016
 년 12월까지 사업비 3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금회 시설비 96억 4천만원과 감리비 4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4억원 등으로 총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67.6%인 71억 8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표]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역 고가 9,661㎡(연장 938m, 폭 10.3m)

○ 사업기간 : 2014. 8 ~ 2016. 12

○ 사업내용 : 교량보강, 그린웨이 조성 및 접근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380억원 (설계·감리 40억, 보행교량 바닥판 설치 112억,

보수·보강 148억, 조경 30억, 기타 50억)

⁷⁾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의 종국적 절차를 말한다.

- 그 사유는 기본설계 완료('15.9.30) 후 각종 경관심의('15.10.21),
 건설기술심의('15.10.27), 문화재 현상변경심의('15.12.18)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과업기간 부족으로 준공기한이 연기('15.12.27
 →'16.1.27)됨에 따른 것임.
- 이는 앞서 동사업의 불용 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이행 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관련 사고이월 세부내역 현황

(단위:원)

연번	구분	사업명	사고이월금액	사고이월사유
1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72,743,000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 한 연기로('15.12.27→'16.1.27) 사고이월
2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2,982,705,43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16.4.17)에 따른 사고 이월
3	시설비	프리캐스트 바닥판 구매	2,405,151,970	납품기한 미도래('16.6.30)에 따른 사고이월
4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건설페 기물처리용역	365,177,00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6.4.30)에 따른 사고 이월
5		서울역주변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274,266,200	서부교차로 교통신호개선공사 준공기한 미도 래('16.6.30)에 따른 사고이월
		지설비 프리캐스트 바닥판 구매 2,405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건설페 기물처리용역 365 서울역주변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274 소 계 6,800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사업관 리(설계감리)용역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감독권한대 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300	6,800,043,600	
6			81,850,00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6.2.16)에 따른 사고이월
7	감리비		300,000,00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6.4.10)에 따른 사고이월
		소 계	381,850,000	
		합계	7,181,893,600	

- 한편,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서울시 재정투입현황을 살펴보면, 고가구조물 보행화에 투입되는 예산(380억원)의 사용범위가사업을 계획할 당시와 비교할 때 17개 보행로 등 다수의 변경사항들이 발생하여 최종사업비의 변동가능성을 전망케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도자료('16. 2. 2)에 의할 경우, 고가차도 이외에 이를 기점으로 서울역일대 종합발전을 위해 총 1,469억원의 주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동사업관련 예산투자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 같은 막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강동지역 아파트 재건축, 강일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해당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5년 예산편성 당시 당해연도 소요예산 267억원 중 50억원 만 편성되었으며, 당해연도 예산 50억원이 2015.9월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추경예산에서 30억원을 증액한 바 있음.
- 그러나 공사추진 도중 흙깍기 구간에서 발파암 발생과 상수도

이설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지 연되어 사고이월된 것으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변수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은 이해될 수 있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도 25억원 씩이나 사 고이월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지양해야 할 것임.

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 금 운 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01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화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고유목적 시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0월액
2015	41,533	239		469	15,585		25,240	41,533	24,268	17,265		
2014	39,137			532	16,463		22,142	39,137	23,313	15,585		239
2013	36,133	252		575	15,046		20,260	36,133	19,670	16,463		

가)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 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9백만원, 이자수입 4억 69백만원, 예치금회수 155억 85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252억 4천만원을 합한 415억 3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58.4%인 242억 6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2억 65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결산서 p.294)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8억 24백만원(이월금 2억 39백만원 포함)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57억 9 백만원과 사용액 242억 68백만원의 차(14억 41백만원)를 합한 172억 6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14억 41백만원 흑자 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도로굴착복구기금	15,824	1,441	25,709	24,268	17,265

다)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296)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62억 44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32억 99백만원이 증액된 395억 43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은 약 105%에 해당하는 415억 33백만원을 지출함.([표]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6,244	39,304	239	39,543	41,533	

○ 지출계획액이 수정된 주된 원인은 굴착원인자(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관리청에 복구 의뢰하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계획을 당초 229억 98백만 원에서 269억 85백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여유자금인 예치금을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사용하여 132억 46백만 원에서 125억 58백만 원으로 감액하였음.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2015년)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고유목적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24,268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3,818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 및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조사연구	도로굴착으로 인한 기존 포장체의 영향을 분석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산출 기준 마련 및 굴착복구 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지침 수립	239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서버 증설	210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1